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60

발의연월일: 2022. 4. 14.

발 의 자:권인숙·강민정·송옥주

조승래 • 남인순 • 박성준

강득구 · 김철민 · 송영길

유정주 • 윤영덕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헌재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영 상녹화 시 피의자(피고인)나 피고인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함.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고자 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한 심문 과정은 원칙 적으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가 가해 자를 직접 마주하거나 법정에 직접 출석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 함.

또한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 피의자(피고인)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참여했을 경우, 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해 미성년 피해자 등이 피의자(피고인)나 피고인 변호인의 요구에 따른 반복회고와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신문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 등이 공간적 안전과 심리정서 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의 선임 및 진술조력인의 참 여를 의무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 제30조, 제37 조 및 제40조).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검사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공판준비기일"을 "진술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의 기회가 있었을 때에는 공판준비기일"로 한다.

④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나 또는 피고인, 그 변호인에 대하여 조사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통지를 하여야한다. 반대신문의 방식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여 하도록하여야한다. 반대신문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다.

제37조제1항 중 "13세 미만 아동이거나"를 "19세 미만이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에서는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법원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⑥ 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생 략) <신 설> ⑦ 검사는 피해자가 19세 미만 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u>할 능력이 미약한</u>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 여야 한다.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 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검사 나 사법경찰관은 피의나 또는 피고인, 그 변호인에 대하여 조사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반대신문의 방식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여 하도 록 하여야 한다. 반대신문 불 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다.

④·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생략)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중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중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할 수 있다. <단선

- <u>⑤·⑥</u> (현행 제4항·제5항과 같음)
- ①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의 기회가 있었을 때 에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 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u>19세 미만</u>
이거나	
	다만

신설>

②·③ (생 략)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 한 증인신문)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에서는 진술조력인으로 하 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 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 <u>다.</u>

②·③ (현행과 같음)

한 증인신문) ① (현행과 같 음)

- ② 법원은 19세 미만이거나 신 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 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 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 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하 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